

---

『서울시설공단』

# 정관 개정 사항 보고

---

2018. 2.



『서울시설공단』

# 정관 개정 사항 보고

---

## □ 보고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  
(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)

## □ 개정 사유

- 공공자전거 2만대 확대운영에 따른 적정 인력 증원 반영
- 정릉천고가 텐던파단 및 「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용역」 결과 관련 PSC교량을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할 전문인력 반영

## □ 개정 절차

- 이사회 의결(`17.12.28 완료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
및 시장 인가 후 공포·시행

【 별 첨 】 정관 개정 세부내용

# 정관 개정 세부내용

## 1. 개정사유

가. 공공자전거 2만대 확대운영에 따른 적정 인력 증원 반영

나. 정릉천고가 텐던파단 및 「PSC박스거더교 긴장재 유지관리방안 수립 학술  
용역」 결과 관련 PSC교량을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할 전문인력 반영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공자전거운영처 정원 반영 : 일반직 + 4명

- 3급 이하 + 4명 (소장 1명, 운영 3명)

나. 도로시설처 정원 반영 : 일반직 + 3명

- 3급 이하 + 3명 (팀장 1명, 팀원 2명)

다. 민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

- 정관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제2호에 “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”으로 변경

라. 부칙신설

- 제1조(시행일) : 공포일부터 시행

## 정원 조정 내용

(개정 전) (개정 후)

㉔ 공공자전거운영처 : 20명 → 24명 (+4명)

㉕ 도로시설처 : 124명 → 127명 (+3명)

※ 공단 총 정원 조정 : 2,718명 → 2,725명 (+7명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☑ 市 자전거정책과-12984호(`17.11.22) 『`18년 서울공공자전거 대행 인력 운영계획』

\* 공공자전거 확대 관련 인력운영 적정성 용역 완료(`16.12)

☑ 市 도로시설과-12256호(`17.10.12) 『PSC교량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』

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 
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## 4. 개정사항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p> <p>3 ~ 7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</p> <p>3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

< 별표 2 > 현 행

**정 원 표**

【총 정원 : 2,718명】

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서비스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
정 원	2,718	6	2,217	25	45	2,147	495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

< 별표 2 > 개 정 안

**정 원 표**

【총 정원 : 2,725명】

임원 및 일반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정 원	2,725	6	2,719	25	45	2,649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